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 결 사 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 록	
건 명	부 서
1.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	복지지원과
2.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	도시교통과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4.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3.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제안사유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 외 1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2. 재산현황 총괄

구분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비고
취득	계	15	7,705	4,765,830	
	토지	11	5,858	571,095	
	건물	4	1,847	4,194,735	
처분	건물	4	1,000	752,625	철거

3. 사업별 재산내역

사 업 명	재산 구분	재산 유형	재산의 표시			담당부서
			수량	면적 (㎡)	기준가격 (천원)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	취득	건물	1	1,440	4,000,000	복지지원과
	처분 (철거)	건물	1	593	557,890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	취득	토지	11	5,858	571,095	도시교통과
	취득·철거	건물	3	407	194,735	

4. 사업별 개요

1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토지 취득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 한부모, 조손, 다문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합한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속적 증가
- 가족센터 건립으로 가족 돌봄 지원 강화, 성별·세대 간 소통 등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 중심의 보편적·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 수행 필요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로 전환
-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등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간 조성 및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용도) 고성군가족센터 건립

나. 취득 및 처분 개요

❍ 대상 재산현황

소 재 지	구분	지목/구조	면적(㎡)	기준가격(천원)	비고
계			2,033	4,557,890	
고성읍 성내리 72-42 외 1필지	취득	철근 콘크리트	1,440	4,000,000	건물 신축
	처분	철근 콘크리트조	593	557,890	기존건물 철거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간)

❍ 총사업비 : 4,000백만 원(국비 300, 균특 1,200, 도비 450, 군비 2,050)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시설명	사업비	연도별				비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족센터	계	4,000	600	1,900	1,500	
	국비	300	300	-	-	
	균특	1,200	-	450	750	
	도비	450	90	135	225	
	군비	2,050	210	1,315	525	

❍ 재원조달 : 국비, 지방비(도비, 군비) 등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일: 2022. 7. 22.(제276회, 제2472호)

다. 변경사항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비고
위치	고성읍 교사리 62-5	고성읍 성내리 72-42, 72-43	매장문화재 발굴 등에 따른 공사 지연	
예산액 (기준가격)	3,000백만 원	4,000백만 원	여성친화공간 복합화, 건축비 상승 등으로 사업예산 추가 확보	특별조정교부금 1,000백만 원 증액
용도폐지 및 건물철거	-	용도폐지 후 철거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재산관리관 복지지원과 유지

라. 추진경위 및 변경 후 계획

❍ 2021. 10. 5.: 2022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

❍ 2021. 11. 11.: 2021년 제4차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 7. 2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2. 10. 4.: 건축기획 용역

❍ 2022. 11. 4.: 설계건축단계 컨설팅

❍ 2023. 3.: 지방재정 투자심사(변경)

❍ 2023.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2023. 5.: 2단계(설계·건축단계) 컨설팅(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023. 5.: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3. 6.: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건축기획 용역준공, 기존 건물 해체

❍ 2023. 7.: 설계 공모(지능정보화계획수립) 등 설계발주, 실시설계

❍ 2023. 12.: 시공업체 선정

❍ 2024. 1. ~ 12.: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가족센터 건립으로 지역 중심의 포괄적 가족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 수행

❍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등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간 조성 및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가족상담, 부모교육, 자녀돌봄, 여성의 취·창업 지원 등 가족 관련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 추진부서: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여성친화담당 허수은(☎2382)

❑ 위 치 도

성내리
고성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고성군청
NH농협은행
고성성당
성모의원
노벨서점
두산학원
원금당
로얄모텔
카페드크렘므
김안경콘택트
소울이돈사랑
신흥모텔
참좋은식당
이장군꼼장어
배효택
치과의원
푸르내재가
복지센터
카페룸
그네빌리지
법무사
이승곤사무소
월든모텔
한빛토목
설계사무소
맛깔참죽
법무사허
판기사무소
새마을금고
신학식당
미화당
우리정삼계탕
고성애견사랑
투다리
지인르네상스
한일뷔페식당
아미고
우연빌라
고성농협
경남고성군수협
성내지점
교학사서점
덕일할인마트
팔도식육점
고성생두부
녹향반찬
동남식육점
꾸브라꼬숯불
두마리치킨
경아식육점
고성공용시장
휴게소
해물사랑
미광사진관
카바투라
이수타손짜장
주영상회
공룡시장
한끼푸드
용상회
가야탕
뚱이쌈밥
무진장맛집
배꼽지
홍삼마을
신흥반점
기획감사
담당관
송다원
김순남
팔도아구찜
장안숯불갈비
주차다방
그레이스제이
하삼동커피
고성읍
보건소
법무사
황대열사무소
박군치킨
눈사랑
안경마트
LG유플러스
굿모닝
베이커리
문화꽃집
업텐브로피자
암소숯불갈비
빛돌영어
경남장애인자립
생활센터협의회
주연테크
꽃이야기
호수탕
덮덮밥
CU
로또
대상광고
별관
전기차충전소
kakao

❑ 전경사진

② 마을주차장 추가조성 및 관리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주차장 조성 주민 건의사업 추진으로 관내 주차공간 부족 해소

❍ (용도) 마을주차장 조성 및 사후관리

나. 취득(처분) 개요

❍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

구분	소 재 지	지목/구조	면적(㎡)	기준가격(천원)	비고
합계			**6,264.62**	**765,830**	
토지	**소계**		**5,858**	**571,095**	
	고성읍 수남리 528-22	답	164	47,035	구암마을
	고성읍 수남리 528-45	답	54	15,487	
	고성읍 동외리 641	답	397	104,411	정동2마을
	고성읍 동외리 643-1	대	294	78,851	
	고성읍 동외리 643-2	잡종지	729	191,727	
	동해면 장기리 307	답	430	49,794	장기마을
	마암면 삼락리 11-22	유지	1,000	7,920	곤기마을
	하이면 석지리 384-14	답	1,022	24,733	음촌마을
	상리면 신촌리 246-2	답	1,537	47,186	신촌마을
	상리면 신촌리 263-1	유지	212	3,032	
	상리면 신촌리 263-8	대	19	919	
건물 (취득·철거)	**소계**		**406.62**	**194,735**	
	고성읍 동외리 643-1	벽돌조슬라브	142.78	111,511	정동2마을
	고성읍 동외리 643-2	경량철골조	131.04	32,760	
	마암면 삼락리 11-22	블록슬라브	132.80	50,464	곤기마을

❍ 사업기간: 2023. 5. ~ 2023. 12.

❍ 총사업비: 2,760백만원(군비2,760원) / 주차장특별회계

❍ 재원조달: 군비100%

다. 추진경위

❍ 2023. 2.: 군민과의 소통간담회 시 마을주차장 조성 건의

❍ 2022. 3.: 건의 대상지 접수 및 선정

라. 향후계획

❍ 2023.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23. 5.: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23. 6.: 건축물 철거 및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 2023. 9.: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 2023. 12.: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

▣ 추진부서: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교통지도담당 강선영 담당자 윤석(☎2604)

❑ 위 치 도(고성읍 구암마을 공동주차장)

❑ 전경사진(고성읍 구암마을 공동주차장)

❑ 위 치 도(고성읍 정동2마을 공동주차장)

❑ 전경사진(고성읍 정동2마을 공동주차장)

❑ 위 치 도(동해면 장기마을 공동주차장)

❑ 전경사진(동해면 장기마을 공동주차장)

❑ 위 치 도(마암면 곤기마을 공동주차장)

❑ 전경사진(마암면 곤기마을 공동주차장)

❑ 위 치 도(하이면 음촌마을 공동주차장)

❑ 전경사진(하이면 음촌마을 공동주차장)

❑ 위 치 도(상리면 신촌마을 공동주차장)

❑ 전경사진(상리면 신촌마을 공동주차장)

5. 군유재산 취득·처분 대상 재산목록

1 취득대상목록

가. 토지

일련번호	재산표시			기준가격(천원)	취득시기	취득(매입)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합 계		**11필지**	**5,858**	**571,095**			
1	답	고성읍 수남리 528-22	164	47,035	2023	구암마을 공동주차장	
2	답	고성읍 수남리 528-45	54	15,487	2023		
3	답	고성읍 동외리 641	397	104,411	2023	정동2마을 공동주차장	
4	대	고성읍 동외리 643-1	294	78,851	2023		
5	잡	고성읍 동외리 643-2	729	191,727	2023		
6	답	동해면 장기리 307	430	49,794	2023	장기마을 공동주차장	
7	유지	마암면 삼락리 11-22	1,000	7,920	2023	곤기마을 공동주차장	
8	답	하이면 석지리 384-14	1,022	24,733	2023	음촌마을 공동주차장	
9	답	상리면 신촌리 246-2	1,537	47,186	2023	신촌마을 공동주차장	
10	유지	상리면 신촌리 263-1	212	3,032	2023		
11	대	상리면 신촌리 263-8	19	919	2023		

나. 건물

일련번호	재산표시			기준가격(천원)	취득시기	취득(매입)사유	비고
	지목/구조	소재지	면적(㎡)				
합 계		**4개소**	**1,847**	**4,194,735**			
1	잡/철근콘크리트	고성읍 성내리 72-42 외 1	1,440	4,000,000	2024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2	대/벽돌슬라브	고성읍 동외리 643-1	142.78	111,511	2023	정동2마을 공동주차장	
3	잡/경량철골조	고성읍 동외리 643-2	131.04	32,760	2023		
4	유지/블록슬라브	마암면 삼락리 11-22	132.80	50,464	2023	곤기마을 공동주차장	

2 처분대상목록(건물)

일련번호	재산표시			기준가격(천원)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지목/구조	소재지	면적(㎡)				
합 계		**4개소**	**1,000**	**752,625**			
1	잡종지/철콘	고성읍 성내리 72-42	593	557,890	2023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철거
2	대/벽돌슬라브	고성읍 동외리 643-1	143	111,511	2023	정동2마을 공동주차장	매입후 철거
3	잡/경량철골조	고성읍 동외리 643-2	131	32,760	2023		
4	유/블록슬라브	마암면 삼락리 11-22	133	50,464	2023	곤기마을 공동주차장	매입후 철거

참고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